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78
----------	-------

발의연월일 : 2026. 5. 28.

발 의 자 : 이기현 · 김영환 · 장철민  
정춘생 · 문진석 · 문대림  
주철현 · 김교홍 · 박은정  
김병기 · 김준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의 제출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음.

정부광고를 통해 연간 1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세금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집행내역에 대한 정부광고주의 정보공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매체 정보 의무적 확인과 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부광고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짜뉴스 확산 매체 등에 대해서도 정부광고가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정부광

고주가 매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정부광고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임.

끝으로, 정부광고 제도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 등의 기능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6조의2·제6조의3 신설 등).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간 계획”을 “연간 계획(이하 “연간 계획”이라 한다)”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전에 홍보매체별 효과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선정과”를 “선정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과”로 한다.

③ 정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매체전략, 광고품질 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④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부광고의 일시중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광고를 중단하도록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이하 “중단요청”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언론사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언론사등의 보도 작성자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제2항, 제308조, 제309조제2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중단요청은 제1항 각 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정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중단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중단 기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집행내역 공개) 정부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액, 내용, 시기, 홍보매체 등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품질, 공익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광고 실태조사 및 품질평가(이하 “정부광고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부광고 평가를 위해 정부기관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전단 중 “제5조”를 “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9조”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지침) ① 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 등 정부기관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에 정부광고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생략)</p> <p>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u>연간 계획을 제5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u></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연간 계획</u> <u>(이하 “연간 계획”이라 한다)</u> - ----- ----- <u>수립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생략)</p> <p>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u></p> <p>&lt;신 설&gt;</p>	<p>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정부기관등의 장은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전에 홍보매체별 효과성 및 신뢰성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u></p> <p>③ <u>정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정부광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공하는 매체전략, 광고품질 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u></p>

<신 설>

③ 그 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④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 선정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  
-----.

제6조의2(정부광고의 일시중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부광고를 중단하도록 정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이하 “중단요청”이라 한다) 할 수 있다.

1. 언론사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 설>

2. 언론사등의 보도 작성자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제2항, 제308조, 제309조제2항의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 설>

② 제1항의 중단요청은 제1항 각 호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정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중단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중단 기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집행내역 공개) 정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광고 집행액, 내용, 시기, 홍보매체 등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품질, 공익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광고 실태조사

에게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조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은 정부기관등의 장이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신 설 >

제1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및 품질평가(이하 “정부광고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항의 정부광고 평가를 위해 정부기관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기관등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시정조치 요구) -----  
-----  
----- 제3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또는 제9조  
-----  
---

제15조(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지

침) ① 정부광고 집행 및 관리 등 정부기관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에 정부광고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p>제) (생략)</p> <p><u>제16조</u>(벌칙) (생략)</p>	<p>제) (현행 제15조와 같음)</p> <p><u>제17조</u>(벌칙) (현행 제16조와 같음)</p>
--------------------------------------------	--------------------------------------------------------------